

의안번호	제 228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상돈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7월 1일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박상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7월 1일
발 의 자 : 박상돈, 박형용, 심기보,
육미선, 이상욱, 최경천,
연철흙

1. 제안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
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, 문구를 개정함. (안 제 1, 2조)
 - (현행) “~의한” → (개정) “~따른”
 - (현행) “계리(計理)” → (개정) “회계처리”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예고 : 해당 없음
- 나. 협의 :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
- 다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8조의 규정에 따라” 를 “제48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9조제1항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” 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” 로, “계리(計理)” 를 “회계처리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<u>제48조의 규정</u>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, 효율성,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<u>제48조에 따라</u>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, 효율성,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5. (생략) 6. 일반회계”란 「지방재정법」 <u>제9조제1항의 규정</u>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. 7. “특별회계”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<u>계리(計理)</u>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. 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일반회계”란 「지방재정법」 <u>제9조제1항에 따른</u> 일반회계를 말한다. 7. “특별회계”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<u>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</u>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<u>회계처리</u>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.